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(전홍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23.

발의의원 : 전홍배 의원, 김보경 의원,  
김은영 의원

## 1. 개정이유

만 나이 정착을 위해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되면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외 8건을 일괄정비함으로써 법과 행정을 일치시켜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.

## 2. 개정 대상 조례

- 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나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」
- 다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라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」
- 마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
- 바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」
- 사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
- 아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자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관계법령 :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## 제1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만 25세이상” 을 “25세 이상” 으로 하고, 제6조제3항 중 “만58세” 를 “58세” 로 한다.

## 제2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, “만 100세” 를 “100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 하며, 제5조 중 “만 100세” 를 “100세” 로 한다.

## 제3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만 9세” 를 “9세” 로 한다.

## 제4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만 40세” 를 “40세” 로 한다.

## 제5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 하고, 제3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 를 “65세” 로 한다.

#### 제6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만 65세” 를 “65세” 로 한다.

#### 제7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2세” 를 “12세” 로 한다.

#### 제8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” 을 “50세 이상 65세 미만인” 으로 한다.

#### 제9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“만 7세” 를 각각 “7세” 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합창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군에 거주하는 만 <u>25세이상</u> 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. 단, 지휘자,반주자,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---- ----- -----<u>25세 이상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단원의 위·해촉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지휘자, 반주자,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<u>만5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제6조(단원의 위·해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58세</u>----- -----</p>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장수노인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<u>만 100세 이상인</u>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장수축하금”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1. -----<u>이란</u>-----<u>100</u> <u>세</u>----- ----- 2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</p>

금전을 말한다. 제5조(지급원칙) 장수축하금의 지급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<u>만 100세</u> 가 되는 날로 한다.	----- 제5조(지급원칙) ----- ----- <u>100세</u> ----- -----
--	--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2. (생 략) 3. “청소년” 이란 <u>만 9세</u> 이상 24 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9세</u> ----- -----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다음사 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. 1.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<u>만 40세</u> 이하의 농업인 2. (생 략)	제4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 1. ----- ----- <u>40세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 <u>이라</u> 함은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	제2조(정의)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

<p>협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.</p> <p><b>제3조(지원 대상)</b>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만 65세</u> 이상 노인 세대</li> <li>2. ~ 3. (생략)</li> </ol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3조(지원 대상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65세</u> 이상 노인 세대</li> <li>2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---	--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“재난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· 7. ~ 8. (생략)</li> <li>6. <u>만 65세</u> 이상으로서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</li> </ol>	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· 7. ~ 8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<u>65세</u>-----</li> </ol> <p>-----</p> <p>-----</p>

#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아이”란 <u>만 12세</u> 이하 아동을 말한다.</li> <li>2. ~ 5. (생략)</li> </ol>	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<u>12세</u>-----</li> <li>2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신중년”란 <u>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</u>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-----<u>50세 이상 65세 미만인</u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)</p> <p>① 탑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운행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3. (생략)</p> <p>2. <u>만 7세</u> 미만의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</p>	<p>제9조(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7세</u>----- -----</p>
<p>제10조(이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· 4. (생략)</p> <p>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<u>만 7세</u> 미만의 자,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자</p>	<p>제10조(이용의 제한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7세</u>----- -----</p>

**참고****상위 및 관계법령** (발췌)**□ 「행정기본법(법률)」 (2022.12.27. 일부개정, 2023.6.28. 시행)**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